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법인명

- 주식회사 피엘티(대표자 : 최규영)

나. 전화번호 : 주식회사 피엘티 담당자 최민주(☎063-285-9121)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 칭 : 양자점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

나. 분 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 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 LED 모듈로부터 여기(勵起)되는 양자점(Quantum Dots)을 발광

층으로 사용하여 표지의 문양에 따라 타공된 홀을 통하여 발광하는 표지 기술

나. 주요 기술내용

- 본 기술은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 안내표지 등의 문양에 따라 타공된 홀의 뒷면에 양자점과 여기광원인 LED 모듈을 배열하여 휘도 효율과 균제도가 향상된 발광형 표지

4.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 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24. 6. 6.(목)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14066)

5. 기타사항

지정신청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
인증-센터(전화 : 031-389-6350, 팩스 : 031-381-499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